



경기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57(2021.1.16.)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정례회의(1.16일)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등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1,2차 유행과는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수도권(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2.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수도권 (2.5단계)	독서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	---

3.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수신자 교육지원청, (사)한국학원총연합회경기도지회,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경기도지회

주무관 **김경숙** 학원공익법인담당
당사무관

대결
2021.01.16.
문광식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복지과-783 () 접수 ()
우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금오동, 경기도교육청북부 청사) / http://www.goe.go.kr
전화 031-820-0543 /전송 /suggy48@goe.go.kr / 비공개(5)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